

# 선잠단지, 앵두마을 일대 한옥 밀집지역 내 지원 사업 안내문

서울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서울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억 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성북동 선잠단지, 앵두마을 일대

성북동 62-17(선잠단지 일대)	성북동1가 105-11(앵두마을 일대)

- 지원범위

### 1.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 2. 한옥의 전면 수선 등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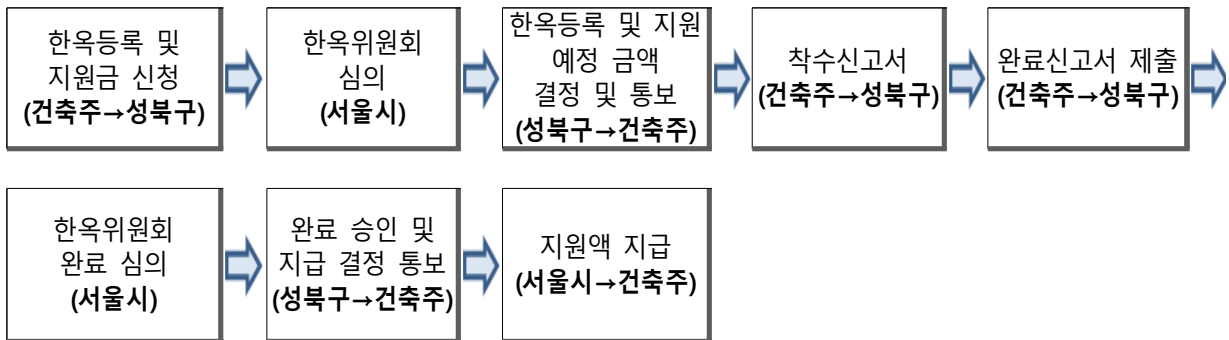
-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2/3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 신청기간 : 2015년부터

- 신청대상 : 성북동 한옥 밀집지역 내 한옥 소유권자 및 건축주

- 구비서류 : 한옥등록 신청서 1부,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 1부  
위치도, 현황사진,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견적서

## ○ 지원절차(흐름도)



※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의 경우 관련 절차 별도이행

## ○ 유의사항

1.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보조 및 용자금 지원 받으실 경우 한옥위원회의 지원결정 전에 기존 한옥의 멸실이나, 한옥 수선공사 착수를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건축허가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옥수선 등 지원결정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옥수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한옥수선 등 공사를 진행하실 때 지원결정 당시 도면에 준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부분 발생 시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사 완료신고 시 변경심의 없이 지원결정 당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한옥 수선 등의 지원은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원신청이 많아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며, 용자의 경우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므로 개인에 따라 용자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원을 받은 한옥의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보조금 : 최종지원일로부터 5년, 용자금 : 용자금의 상환완료일)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아야 하고 지원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 및 용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한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해주시기 바라오며,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지원된 한옥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 및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한옥문화팀(☎02-2241-280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성 북 구 청